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24
----------	-------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 전환(2023.1.1.) 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시설물(협동화단지 등)의 운영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향후,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15조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부여의 중복혜택을 방지하며,
- 2023년 지역특화사업 결과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제언에 따라 안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판로구축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금융기관”,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인용 정비 (안 제2조제7호)
-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약칭에 사용한 조문 부호 오기 정비 (안 제12조제1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물(협동화단지 등)의 운영규정 근거 마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범위 확대 정비 (안 제16조제2항)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23조 ~ 제26조)
- 현행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제27조, 제28조로 개정 (안 제27조, 제28조)

- 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4. 03. 20. ~ 2024. 04. 09.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융기관” 이란,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제3조제2항 중 “· 여성발전기본법 · 제15조제1항” 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시 ·” 를 ““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 산하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제23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홍보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우선구매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기관의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 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소상공인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소상공인지원과장 황 병 노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적경제팀장 권 성 화
	담당자 성명·전화	한 상 순 (행정 2276)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각 목의 은행을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③ ~ ⑤ (생 략)

제12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등) (생 략)

〈신 설〉

〈신 설〉

제1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례보증) ① -----
----- “시”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

-----.

1. 시 산하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5.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홍보실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4조(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우선구매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공공기관의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6장 보 칙

<신 설>

제24조 (생 략)

<삭 제>

제6장 보 칙

제28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424호
----------	---------

제안년월일 : 2024. 6.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 이유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을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시 산하 공공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6조제2항제1호와 적용범위에 충돌·모순점이 있어 삭제하고, 우선구매 교육훈련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

□ 주요골자

- 수탁기관의 대상에 시 산하 공공기관을 삭제(안 제16조)
- 우선구매 교육훈련을 임의규정으로 조정(안 제25조)
-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안 제26조)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안 제25조 중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6조 중 “평가하여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u>사회적경제 조직</u> 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 -----.	제1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 -----.
<u><신설></u>	<u>1. 시 산하 공공기관</u>	<u><삭제></u>
<u><신설></u>	<u>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u>	<u>1. · 2.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u>
<u><신설></u>	<u>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5조(우선구매 교육훈련) <u>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제25조(우선구매 교육훈련) ----- ----- ----- 교육훈련 ----- ----- 시행할 수 있다.
<u><신설></u>	제26조(공공기관의 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6조(공공기관의 평가) ----- ----- ----- 평가할 수 있다.